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1월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 27.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김태형 의원 외 7인
○ **발의일자:** 2021. 1. 14.
○ **회부일자:** 2021. 1. 15.
○ **검토기간:** 2021. 1. 15. ~ 2021. 1. 25.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수탁 관련 상위법령 취지와 맞지 않음.

○ 이에 달서문화재단도 전문성을 보유한 여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친 후,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4. 관계 법령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제27조)하고 있으며, 현행「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도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법제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은 폐지함(**후단 별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 그러나 현행「웃는얼굴 아트센터 운영 조례」에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달서문화재단(이하 '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위법령(및 위 법제처 의견)과 맞지 않았음. 이에 동 의안은 이를 새로이 정비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

○ 따라서 개정 취지는 물론 개정안 조문에 대해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안 취지를 고려할 때, 집행부가 아트센터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지금까지 행한 일련의 위탁 행정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바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

1) 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된 후, 지금까지 의회에 대해 (재) 위탁 동의(보고)을 받은 사실이 없음[1]. 이는 현행 「달서구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위배.

---

1)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의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2) 재단과 집행부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제5조(위탁기간)를 보면, "**위탁기간**은 수탁자의 해산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에 따라 **협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여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따른다."고 한, 현 조례 규정(제3조제3항)을 위배

- 상기 협약서 내용은 최초 위탁 이후 한 번도 갱신된 사실이 없으며, 반면, 재단이 위탁받은 또 다른 시설인 <달서가족문화센터> 경우, <위·수탁 협약서>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명시. 상호 협약서 내용을 달리한 사유 및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

3) 본 아트센터 조례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재단과 별도의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야 함[2]에도 협약서 자체가 없음. 이 역시 현 조례 규정을 위배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및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4. 2. 27. 의견 제시 14-0045 및 2017. 7. 25. 의견제시 17-0197참조).

2)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2조의4(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

조례내용

「00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00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0000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Ⅰ.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개정(2015.1.20. 공포, 2015.7.21. 시행)되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조례에서는 행정재산을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주민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Ⅱ. 개선방안

○ 행정재산을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주민이 행정재산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처 : 법제처